

【문38】 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관례에 의하면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39】 친생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
- ②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 ③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⑤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4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하다.
- ②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 ③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호적법 10문 】

【문41】 인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 까지 같음)

- 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 ② 혼인중인 처가 남편과 별거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없다.
- ③ 부가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인지신고서에는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인지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입적할가가 없으므로 인지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 ⑤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으나,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의무자가 그 분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42】 다음은 호적기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이 사망하여 친가에 복적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혼사유와 사망사유는 복적된가에 이기한다.
- 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
- ③ 혼인 중에 있는 남자가 중혼을 한 경우, 남자의 신분사항란에 후혼의 혼인사유를 기재함과 동시에 후혼의 처를 혼인입적시키고 처를 친가에서 제적처리한다.
- 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된 때에는 양가(養家) 입적에 갈음하여 그 양자를 호주로 하여 신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43】 미성년자의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실종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때에는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될 자가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자의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생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 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양친(養親)이 모두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生家)의 부모가 친권자로 되지 못하고 후견이 개시된다.

【문44】 현행 국적법 및 호적법규에 의할 때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모(母)가 외국인인 혼인외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父)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다.
-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④ 국적상실의 호적신고는 국적상실자의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적격자로서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적상실자 본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의 호적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결국 국적상실의 호적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문45】 다음은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재판상 파양신고, 재판상 이혼신고와 같은 호적신고의 경우에는 호적신고의무자가 아닌 소재기 상대방도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호적신고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는 임의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없다.
- ③ 취적의 판결이 2007. 3. 2. 확정되고, 그 판결을 2007. 3. 9. 송달받은 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일이 기재된 신고서에 의하여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출생자의 이름을 아직 작명하지 못한 경우 우선 ‘미정’으로 신고하고 추후 작명이 되는 대로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름을 호적에 기재할 수 있다.
- ⑤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와 호적사무관장자가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제적부 등에 의하여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또는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나, 신고사항의 진실성과 신고의사의 진의성까지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문46】 다음은 개명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출생신고서 한글로만 신고된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물론 한자로만 신고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따로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므로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식으로 그 혼인사유 기재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원래의 호적에 이기함으로써 이중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여자가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비록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부모가 사망한 의사능력 없는 자의 호주승계신고를 후견인이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 읍, 면의 장은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되었음이 호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유무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기재할 수 있다.

【문47】 다음은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에 의한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 ② 조정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③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유언증서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 ④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자의 모(母)사이에 친권자를 정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협의서
- ⑤ 생부가 임의인정한 경우, 생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48】 다음은 호적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는 호적신고와 같이 우송 또는 사자(使者)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 ②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 ④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동일하여 그 선후를 판명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49】 혼인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혼인신고서류의 반류를 요청하면 혼인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 ②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미성년자인 혼인당사자에게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호적예규의 입장이다.
- ③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호적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호적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④ 사실혼존재확인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창설적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본적지 호적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문50】 다음은 사망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으로는 신고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 ② 호적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잔류자)로 기재된 자를 호적에서 제적하려면 원칙적으로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가 그 자의 본적지 가정법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아야 한다.
- ③ 망자의 사망 후 1980년경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만 사망정리가 되고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유무된 경우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당시의 사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본적지의 호적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무된 호적의 기재를 직권 정정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의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사람에 대하여 취적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 그 사망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